



AFC's

# 귀하의 권리 이해하기

뉴욕시 공립학교 이민자 가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안내

2015년 9월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Protecting every child's right to learn

# 목 차

서론.....	3
학교 등록.....	4
공립학교 신청 및 학교 선택.....	6
영어학습학생들 (ELLs) 을 위한 서비스.....	7
특수 교육 및 장애학생.....	10
정학.....	13
진급 및 졸업.....	14
차별.....	16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	17
부모로서의 권리.....	18
교육부 (DOE) 담당자 문의처.....	19
이민 지원 문의처.....	20
주요 용어 및 약어.....	22
권리 보호 도움말.....	23

본 가이드는 법적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뉴욕 청소년센터 (AFC) 의 견해를 주장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 및 법률의 요약을 시도한다.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및 법률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서론

본 가이드는 이민자 가족에게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된 대상자는 유치원에서 12학년 사이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를 읽으면서 유의할 6가지 기본 권리:

## 6가지 주요사항:

###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안에서 귀하의 권리

1. 귀하의 자녀는 당사자의 이민 신분 또는 가족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학교를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중언어 또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ENL)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초, 중, 고등 공립 학교 지망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된 학교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자녀가 정학 또는 학급 반복의 위험이 있을 경우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의 자녀는 자신의 인종, 이민 신분, 출신 국가, 또는 민족에 관한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읽고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AFC의 교육 상담 전화

866-427-6033 (수신자 부담) 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언어로 상담 가능.

# 학교 등록

## 제 아이는 언제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5세에서 21세의 학생은 출생지와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시(NYC)에서, 4세 아이들은 공립 유아학교(UPK)에 다닐 자격이 주어지고 3세의 어린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공석이 생기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지원한 5세에서 21세의 학생은 누구나 입학 허가를 받고 수업일 5일 이내에 적절한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할 수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 제한적 교육 수준, 또는 영어학습학생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고교 졸업장에 준하는 예비 프로그램으로 보내질 수 없습니다.

## 이민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 학생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신분에 상관 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학생 또는 가족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팁: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할 경우 000-00-0000 으로 입력하십시오

이민 학생들은 이민 증명서나 사회 보장 번호가 없어도 무료 아침식사, 무료 점심식사, 교통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 아이를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

뉴욕시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해당 학생은 뉴욕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간다면, 여러 선택지 중 지역 학교에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해당 지역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면, 311번에 전화하세요. 또는 자치구의 가족 환영 센터(Family Welcome Center)에 방문해 자녀가 선택 가능한 다른 학교들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자치구의 가족 환영 센터에 연락해 고등학교를 찾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가족 환영 센터 연락처는 이 가이드 19쪽에 있습니다.

## 주요 서류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 목록

1. **거주 증명서**, 가스, 케이블, 전기, 수도 요금, 임대 계약서 등 입니다. 전화 요금, 신용 카드 청구서, 운전면허증 등은 허용 가능한 증명서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두 세 건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거주 증명서로 인정이 되는 문서 목록은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default.htm>.
2.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국제 여권도 제출 가능.
3. **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
4. 가능한 경우, **자녀의 가장 최근 성적표/성적 증명서,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504 편의제공 계획서 (Accommodation Plan)** — 해당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0 페이지 참조.

## 아이가 학교를 다닌 기록 또는 다닌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아이에게 여전히 공립학교에 바로 입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의 입학 상담 교사 혹은 다른 직원이 학생 프로필을 작성하여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없다면 학교 측에서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아이의 기록/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에서 받은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 교육부, 혹은 외부 조직 (예를 들면 지역 사회 기관 또는 개인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외국 성적표/성적 증명서를 번역 받으십시오. 학교측에서 번역된 문서를 검토하고 학생의 성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학교에 입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립학교 신청 및 학교 선택

## 학교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

귀하의 자녀가 거주 학군 내 학교에 배정 될 수 있지만, 귀하는 자녀가 어떤 학교, 혹은 어떤 종류의 학교를 다닐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알아보고 관심있는 곳을 방문하여 자녀의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 학생들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아래 목록을 포함한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 **차터 스쿨 (Charter School):** 민간 소유로 운영되는 공립학교. 별도로 지원을 해야하며 입학 추첨 제도입니다.
- **마그넷 스쿨 (Magnet School):** 학군 내 속해있지 않은 특수목적 공립학교 (예를 들어, 예술, 기술, 과학). 별도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 **국제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민자인 공립학교
- **영재 및 재능 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고급 프로그램이 있는 공립학교 입니다. 시험에 응시해야 입학이 허가됩니다. K-2단계의 영어학습학생은 번역된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은 9개국어로 제공됩니다. 현재 및 이전 영어학습학생을 위해 그 외 시험 보조가 제공됩니다.

학교 신청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 서비스에 문의해 주시고 DOE 웹사이트 내 학교신청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default.htm>.

##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낼 수 있나요 ?

모든 전학 신청서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전학의 가장 전형적인 세 가지 유형은 (1) 건강상의 문제, (2)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3) 통학상 불편 (대중교통 통학, 각 방향으로 90분 이상) 입니다. 귀하의 다른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전학 신청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학 승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E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Transfers/default.htm>.

### 팁:

[www.schoolbook.org](http://www.schoolbook.org)

에서 “찾기 + 비교하기” 검색도구를 사용해 뉴욕시의 여러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을 찾고 비교해보세요.

## 영어학습학생들(ELLs)을 위한 서비스

모든 학생은 영어 능력에 관계 없이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특별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학생들은 “영어학습학생들”(ELLs) 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흔한 교육 방식은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TBE)** 과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ENL)** 프로그램 입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서비스를 받을 조건을 충족하나요 ?

자녀가 뉴욕시 학교에 입학하면, 교사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가정 언어 설문조사 (HLIS)**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설문은 가정에서 귀하와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묻습니다. 다음, 교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에 대해 귀하와 자녀와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의 지난 학업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귀하의 자녀는 영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학습학생을 위한 뉴욕시 인증시험 (NYSITELL)** 을 영어로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 입학한지 10일 내로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녀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영어학습학생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어학습학생은 **뉴욕시 제2언어로서의 영어 성취도 시험 (NYSESLAT)** 또한 매년 봄 응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성취하면, 더 이상 영어학습학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교육 및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받지 않을 것입니다.



## ELL 프로그램들의 차이점

1.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TBE):** 영어와 학생의 모국어 둘 다 사용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학생의 실력이 늘수록 영어 사용 비중도 늘어납니다.
2.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ENL):** 수업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며 훈련된 교사에게 읽기, 쓰기, 말하기를 배웁니다. (대부분의 새 이민자 학생은 이 수업을 수강합니다.)
3. **이중언어 교육 (DL):**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이 한 교실에서 함께 배워, 두 그룹의 학생이 영어와 제2언어에 모두 능숙해지게 합니다. 각 학교는 자체적 입학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욕시 이중언어 과정은 스페인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지만,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TBE 및 DL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NR/rdonlyres/49375968-8BB1-4617-A287-7A18C795B1FF/0/BilingualProgramsListSY201516.pdf>.

## 제 자녀의 ELL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부모님들에게는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그리고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과정 중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과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은 덜 흔합니다. 자녀의 지역 내 다른 학교가 귀하가 원하는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며 공석이 있다면, 그 학교로 자녀를 전학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통학을 위한 무료 차편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통편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학교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세요. 학교는 학년 내 영어학습학생의 숫자에 따라 새로운 언어에 대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 초,중학교: 한 학급 또는 2 학급 이내로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어 학습 학생들이 15명 이상일 경우
- 고등학교: 한 학급에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어 학습 학생들이 20명 이상일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명시된 수 이상의 영어학습학생이 있다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지역에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가 없다면, 자녀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 팁: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프로그램은 각 학생의 영어 능력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는 한 학급의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학급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높다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제 자녀의 학교가 TBE 및 ENL 프로그램에 대해 저에게 연락을 줄까요?

네. 뉴욕시 법에 따르면, 자녀가 영어학습학생으로 지정 받았다는 사실을 수업일 5일 이내로 알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중언어 또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귀하에게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2.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과정에 대한 주의 기준, 시험 및 조건 설명
3.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는 모든 자료. 문제가 있다면 저희 도움센터에 전화하세요.

## 제 자녀가 더 이상 영어 학습 학생이 아닐 경우 언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어에 능숙해진 이후 최소 2년 동안 (뉴욕시 제2언어로서의 영어 성취도시험 점수에 따라), 이전 영어학습학생들은 매주 90분 이상의 통합적 ELL 서비스나 (과학, 수학 등의 영역에서 영어 실력을 쌓는 방법 교육) 다른 이전 ELL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 팁:

학교 직원은 ELL 학생의 부모를 최소 1년에 한번 만나 학생의 언어 발달, 성과와 필요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 특수 교육 및 장애학생

## 특수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특수 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학습 및 행동 장애 부터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까지 이릅니다. 특수 교육 학생들은 일반 교실에서 비 장애인 학우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작업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상담 등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 교육 시스템과 장애를 가진 학생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특수 교육에 대한 AFC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영어: [http://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pdf](http://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pdf)

스페인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spanish.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spanish.pdf)

중국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chinese.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chinese.pdf)

벵갈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bengali.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special_ed_bengali.pdf)

## 아이들은 어떻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학부모는 자녀가 특수 교육 대상자로 평가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학군의 특수 교육 위원회 (CSE) 위원장, 또는 학교 교장 앞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 또한 학생을 특수 교육 서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권유서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학교는 특수 교육을 고려하기 전에 일반 교육 서비스 (예를 들어, ENL, 개인 지도, 방과 후 학습, 행동 전략) 를 통해 학생을 돕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자녀가 특수 교육 대상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어떻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귀하의 자녀는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관계없이 즉시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수 교육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의 특수 교육에 대한 소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평가를 받으면, 귀하는 학교에서 전문가 팀을 만나 자녀가 특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언어 사용자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검증 받은 교사 또는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팀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개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프로그램, 서비스와 교육 목표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제 자녀의 특수 교육 문서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학부모는 특수 교육에 관한 모든 IEP, 평가 결과와 통보를 선호하는 언어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회의에 통역사와 함께 참석할 권리와 귀하의 자녀 학교에 이와 같은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저희 전화 상담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718) 935-2013에 전화해 교육부(DOE)에 불만사항을 접수해도 됩니다.

### 팁:

발달이 지연된 0세부터 만 3세의 영유아는 조기 개입 (EI)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개입 (EI)에 자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 개입에 대한 AFC의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311로 문의하십시오.

영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early\\_intervention.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early_intervention.pdf)

스페인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early\\_intervention\\_spanish.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guide_to_early_intervention_spanish.pdf).

## 제 자녀가 특수 교육에서 ELL 서비스를 제공받을까요 ?

네. 자녀가 ELL이라면 특수 교육과 ELL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것입니다.

## 만약 제 자녀 학교에서 이중언어 특수 교육반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하죠 ?

귀하의 자녀는:

1. 영어만을 사용하는 특수 교육반에 배정받아 ENL 교육을 받거나
2. 당사자의 전문 이중언어 보조교사가 함께 반에 참여해 학생에게 통역하는 방법.

### 경고:

학교는 귀하의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그녀의 IEP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ELL 서비스 포함)!

## 만약 제 자녀의 학교가 자녀 IEP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죠 ?

만약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수업, 서비스 및 언어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는 공정 심의 청문회를 열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교육부(DOE)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발언 기회 제기는 어떻게 요청하죠 ?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로 보내기:

Impartial Hearing Office  
Department of Education  
131 Livingston St., Room 201  
Brooklyn, NY 11201  
전화 718-935-3280  
팩스 718-935-2528

### 팁:

귀하는 공정한 발언의 기회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발언 날짜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718) 935-3280으로 전화해 공정한 발언 사무소에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교육부 (DOE)의 웹사이트는 공정 심의를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chools.nyc.gov/NR/exeres/9914376B-5893-432A-A8B9-9CE42B1CEA50.htm>.

또한, **AFC**의 특수 교육 공정 심의 지침서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impartial\\_hearings.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impartial_hearings.pdf)

스페인어: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impartial\\_hearings\\_spanish.pdf](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impartial_hearings_spanish.pdf).

# 정학

정학이란 학생을 교실과 분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정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교장의 정학** — 5일까지 지속될 수 있음, 또는
- **교감의 정학** —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정학 학생이 학교 첫날 만 17세 이상일 경우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본인 스스로와 남에게 위험으로 간주될 경우 정학 당하며 **ELL학생도 정학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정학 징계를 받을 경우, 학생은 정학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모든 숙제, 학업 내용 및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제 자녀가 정학 당하면 어떻게 해야죠 ?

만약 귀하의 자녀가 정학을 당했을 경우, 귀하는 자녀의 특정 징계 이유를 구두와 서면으로 즉시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자녀의 행동에 관한 모든 증빙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정학 회의 (교장의 정학일 경우) 또는 청문회 (교감의 정학일 경우) 갖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정학 회의 및 청문회에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AFC의 전화 상담 서비스 또는 뉴욕 법률 서비스 (212) 431-7200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팁:

만약 귀하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정학을 당했을 경우 저희 전화 상담 서비스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이해할 권리가 있는 특별 절차 및 참여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 진급 및 졸업

교육감 규정 A-501는 매 학년의 진급에 관한 지침서를 제시합니다. 이 지침서는 아랍어와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default.htm>.

## 제 자녀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

아래 차트는 기본 진급 기준을 학년별로 나열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함을 위해 DOE 웹 사이트에 상세히 제공되는 해당사항 지침서를 읽는 것을 권유합니다:

학년	기본 조건
유치원 — 2학년	교직원이 학생을 진급시킬지 결정합니다.
3학년 — 8학년	진급 결정은 학생의 시험 점수, 과목 성적, 성적표, 학생 프로젝트와 과제의 검토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국가 시험 점수는 진급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9학년 — 12학년 (고등학교)	진급은 학생의 출석과 학점 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학년 입학에 위해 8학점 요구</li> <li>• 11학년 입학에 위해 20학점 요구</li> <li>• 12학년 입학에 위해 28학점 요구</li> </ul>

## ELL 학생들의 진급이 제지될 수도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낙제 및 특정 진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ELL 학생들도 진급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 ELL 학생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두 그룹의 ELL 학생들은 진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 미 공립학교 참석 년 수가 2년 미만인 3학년에서 7학년 사이 ELL 학생들 및 미 공립학교 참석 년수가 1년 미만인 8학년 ELL 학생들; 또한
2. 개인 교육 프로그램(IEP)에서 진급 기준에서 면제 또는 수정된 진급 기준이 요구된다고 평가한 특수 교육 학생들 (ELL 학생 포함).

## 만약 제 자녀에게 진급 제지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학교는 저에게 어떻게 통보하나요 ?

귀하의 자녀에게 진급 제지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매년 총 3회에 걸쳐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 추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 2월 15일 서면으로 ("진급 의문"이라는 편지로)
- 학년 말 이전에 우편으로

**경고:** 학교가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녀의 진급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결정한 제 자녀의 진급 제지를 제가 항소 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만약 학교의 결정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장의 결정을 검토한 이후 최종 결정을 확립합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

귀하의 자녀는 44학점을 이수하고, 4번의 리전트시험과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시에서 승인 받은 5번째 시험(추가 리전트시험, 고급학습과정시험, 직업과 기술 시험(CTE) 등)을 선택 응시해 65점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 합니다.

ELL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 NYSESLAT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전트 영어 시험은 영어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ELL학생이 시험의 다른 과목들을 영어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학생은 자신의 선호 언어로 나머지 과목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선, **AFC의 ELL을 위한 고등학교 진급과 졸업** 책자를 참고하세요. 영어, 스페인어, 벵갈어,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로 [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get\\_help/guides\\_and\\_resources](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get_help/guides_and_resources) 에서 제공됩니다.



# 차별

학교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

- 귀하에게 자녀는 미국시민이 아니므로 학교에 참석 할 수 없다고 통보할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교직원이 자신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발언했을 경우

**만약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 교육부 공평한 기회 담당실  
(NYC DOE Office of Equal Opportunity/OEO): (718) 935-3320  
*민원은 호소의 대상이되는 시간 발생 1년 이내에 OEO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미 교육부 민권 사무소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646) 428-3900
- 뉴욕시 인권위원회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212) 306-7050





##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부모회 또는 학부모-교사 협회 (PA/PTA)**에 가입하기. 해당 단체들은 모든 학교에 존재하며 교내 모든 결정에 참여하지만 학교 운영 결정권은 PA와 PTA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한 경우 교내 **학부모 코디네이터** 연락하기. 학부모 코디네이터 부모들의 염려를 파악하여 도움을 제공하며 학부모 참여를 지원합니다.
- **학교 리더십팀**에 참여하기. 이는 모든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 기반 단체들로서 동등한 수의 학부모와 교직원이 최소 한달에 한번 만나 예산, 교육과정, ELL 서비스 등 학교 관련 정책을 계획 및 결정합니다.
- **타이틀 I 학부모 위원회 (TITLE I Parent Advisory Council)** 참여하기. 타이틀 I은 ELL 학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아이들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지역사회 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 (CEC)** 가입신청하기. CEC는 뉴욕시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32개 기관으로써 각 공립학교 지역의 교육 정책 및 우선순위를 성립합니다. CEC 가입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교육부(DOW)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Offices/CEC/GPInformation/default.htm>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어학습자 교육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CCELL)** 참여 신청: <http://schools.nyc.gov/Offices/CEC/default.htm>.
- 뉴욕 공교육 개선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 단체**에 가입하기.

## 부모로서의 권리

- 귀하는 **선호하는 언어로 학교 관련 정보** (보고서, 성적표, 주의 사항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소 벵골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로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 귀하는 **번역 및 통역 지원을 받으며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지사항에 게시해야 하며 만약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자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교장에게 이 정보에 관한 문의 부탁하십시오.
- 귀하는 **자녀의 모든 학교 기록 사본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기록은 요청 후 주말을 포함한 45일 안에 즉시 제공 되어야 하며, 또한 귀하는 자녀의 기록 정보를 호소 및 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녀의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자주 필요한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면, 저희 도움센터에 전화하거나 DOE의 언어 사용 불만사항 번호 (718) 935-2013에 전화해 불만사항을 접수하세요.



## 교육부(DOE)담당자 문의처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ELL 포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람들과 상담하십시오:

1. 귀하 자녀의 교사
2.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3. 학교 교장
4. 귀하 자녀의 학교의 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의 리스트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boutUs/schools/superintendents/HSsupes.htm>.

### 가족 환영 센터:

지역 가족 환영 센터에 연락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해주세요.

자치구	해당 지구	주소	전화
브롱스 (Bronx)	7, 9, 10	1 Fordham Plaza, 7 <sup>th</sup> Floor	718-935-2178
	8, 11, 12	1230 Zerega Ave, Room 24	718-935-2278
브루클린 (Brooklyn)	17, 18, 22	1780 Ocean Avenue, 3rd Floor	718-935-2313
	20, 21	415 89th Street, 5th Floor	718-935-2331
	19, 23, 32	1665 St. Mark's Avenue, Room 116	718-935-2340
	13, 14, 15, 16	29 Fort Greene Place (BS12)	718-935-2371
맨해튼 (Manhattan)	1, 2, 4	333 7th Avenue, 12 <sup>th</sup> Floor	718-935-2383
	3, 5, 6	388 West 125 <sup>th</sup> Street, 7 <sup>th</sup> Floor	718-935-2385
퀸즈 (Queens)	24, 30	28-11 Queens Plaza North, 3rd Fl	718-935-2386
	25, 26	30-48 Linden Place, 2nd Floor	718-935-2391
	27, 28, 29	90-27 Sutphin Boulevard, 1st Floor	718-935-2393
스테이튼 아일랜드 (Staten Island)	31	715 Ocean Terrace, Building A	718-935-2402

## 이민 지원 문의처

뉴욕 시립 대학 (CUNY) Citizenship Now: 예약시 무료 이민 서비스를 제공되는 CUNY 센터.

뉴욕 시립 대학 (CUNY) 센터	언어	전화	시간	주소
Hostos Community College	영어, 스페인어	718-518-4395	월-금, 9am-12:30pm 1:30-4:30pm	427 Walton Ave., T-501 Bronx, NY 10451
Medgar Evers College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718-270-6292	월-금, 9am-1pm 2-5pm	1150 Carroll St., Rm 226 Brooklyn, NY 11225
City College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212-650-6620	월-금, 9am-5pm <i>예약제</i>	160 Convent Ave., North Academic Center, Rm 1-206 New York, NY 10031
CUNY Xpress	영어, 스페인어	212-568-4692	월-금, 10am-5pm	560 West 181st St. New York, NY 10033
Flushing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718-640-9223	월-금, 9:30am-1pm 2-4:30pm	39-07 Prince St., Ste. 2B Flushing, NY 11354
York College	영어, 스페인어	718-262-2983	월-금, 9:30am-4:30pm <i>예약제</i>	94-20 Guy Brewer Blvd. Jamaica, NY 11451
College of Staten Island, El Centro & Project Hospitality at The Help Center	영어, 스페인어	718-448-3470	월 12-7pm & 목-금, 9am-5pm <i>목-금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i>	514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4

## **The Door, 법률 및 이민 서비스:**

만 12-21세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센터 : 이메일 [legalstaff@door.org](mailto:legalstaff@door.org) 또는 212-941-9090, 내선 3280

## **법률 구조 협회 (Legal Aid Society), 이민 프로젝트:**

구금 이민자를 위한 이민법 전화 상담 서비스, 수요일 1pm—5 pm 가능: 212-577-3456. 이민 재판을 기다리는 구금되지 않은 이민자는 212-577-3300 에 전화하세요.

## **가톨릭 자선 단체:**

뉴욕주 (NYS) 뉴 아메리카 전화 상담 서비스: 212-419-3737 또는 1-800-566-7636 (뉴욕주 내 수신자 부담). 보호자를 위한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LOPC)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보호중인 분들을 위한 긴급전화: 1-888-996-3848 (월요일에서 금요일, 9am—8pm).

## **뉴욕 아랍계 미국인 연합:**

이민 관련 서비스—무료 상담과 저렴한 서비스. [arabamericanny@gmail.com](mailto:arabamericanny@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8-745-3523 에 전화해 예약하세요.



## 주요 용어 및 약어

**BFSC** — 자치구 현장 지원 센터 (Borough Field Support Center)

**Chancellor's Regulations** — 뉴욕시 공립학교 공식 규정 (교육감 규정)

**DL** — 이중언어 프로그램 (Dual Language program)

**EI** — 조기 개입 프로그램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ELL** — 영어 학습자 (English Language Learner)

**ENL** —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 (English as a New Language)

**HLIS** — 가정 언어 설문 조사, 자녀의 우세한 언어 확인  
(Home Language Identification Survey)

**IEP**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NYSITELL** — 뉴욕주 영어 학습자 확인 시험, 학습  
자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New York State Identification Tes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NYSESLAT** — 뉴욕시 제2언어로서의 영어 성취도  
시험 . 학생의 영어 독해, 작문, 청취, 회화 능력을 측  
정합니다. (New York Stat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chievement Test)

**PA/PTA** — 학부모회/학부모-교사 협회  
(Parents Association/Parent-Teacher Association)

**TBE** —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UPK** — 미국 공립 유아학교  
(Universal Pre-Kindergarten)



## 권리 보호 도움말

- ✓ **자녀의 학교 관련 문서**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IEP, 평가서 등) 및 모든 편지와 학교 보고서 등을 날짜별 정리해 파일로 **보관하기**.
- ✓ **문서로 작성하기**: 학교 교직원 및 외부 임상의 (의사 또는 상담가)와 진행한 모든 회의 및 소통의 날짜와 횟수를 기록해서 문서로 보관하기; 진행한 대화는 편지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 서면으로 재확인하며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기.
- ✓ **모든 중요한 정보는 배달 증명 우편** 및 반신 수령증 발급 우편, 수령확인 가능한 팩스 등 발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송하기**.
- ✓ **자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상황이 수월히 진행될 때든와 환경이 어려워질 때든 교사와 소통하여 자신을 자녀교육에 관심있고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로 정립하십시오.
- ✓ **끈기 있게 지속하기**. 누군가가 귀하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 **생산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일어난 상황에 때문에 화날 경우에도 침착하게 요점을 정리해 대화를 진행하십시오.
- ✓ 교육부(DOE)가 귀하의 관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친구**, 가족, 또는 학교 밖에서 귀하의 자녀를 알고있는 사람을 학교 모임에 **데리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본 가이드 및 뉴욕 교육서비스 관련 추가 정보는 저희 웹 사이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



## 뉴욕 청소년센터(AFC)의 사명

뉴욕 청소년센터(AFC)는 모든 학생들, 특히 소수 인종 학생들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뉴욕이 제공하는 최상의 교육 접근기회를 촉진한다. 뉴욕 청소년센터는 체계적인 개혁을 전진시키고 가족과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며 각각 학생의 교육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특유의 통합 전략을 활용한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Jill Chaifetz 교육 상담 전화 서비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866-427-6033 (수신자 부담)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Inc.**

151 West 30th Street, 5th Floor

New York, NY 10001

전화 212-947-9779

팩스 212-947-9790

[info@advocatesforchildren.org](mailto:info@advocatesforchildren.org)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